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15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제220771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29조의4 신설 등)	2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15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22.
3. 회 부 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및 사고기록장치 열람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해당할 뿐 사고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 따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상 자동제동장치’가 페달 오인 사고나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29조의4 신설 등)

개정안은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9조의4(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u> ① <u>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전방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u> ② <u>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제79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u>
5. ~ 19. (생략)	5. ~ 1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급발진¹⁾²⁾ 의심 사고 신고건수는 2015년 이후 총 348건임.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

(단위: 건)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50	57	58	39	33	25	39	15	24	8	348

※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실제 급발진 발생 여부를 의미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³⁾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페달블랙

- 1) 급발진이란 정지 상태의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함.
- 2) 국토교통부는 급발진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판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급발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가 없으며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3) 「자동차관리법」

박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도입하고자 하는 장치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미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형 승합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2017년에 대형 화물·특수·승합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23년부터 신규 개발되는 승용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음.⁵⁾

또한, 벌칙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4) 주행 중 전방의 물체와 충돌 회피·완화를 위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제도가 이미 시행 중('17.1~)으로 법 개정을 통한 장착 의무화는 실익이 부족함.

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이미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 불필요함.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3)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는 이미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시행
중으로 별도의 개정은 불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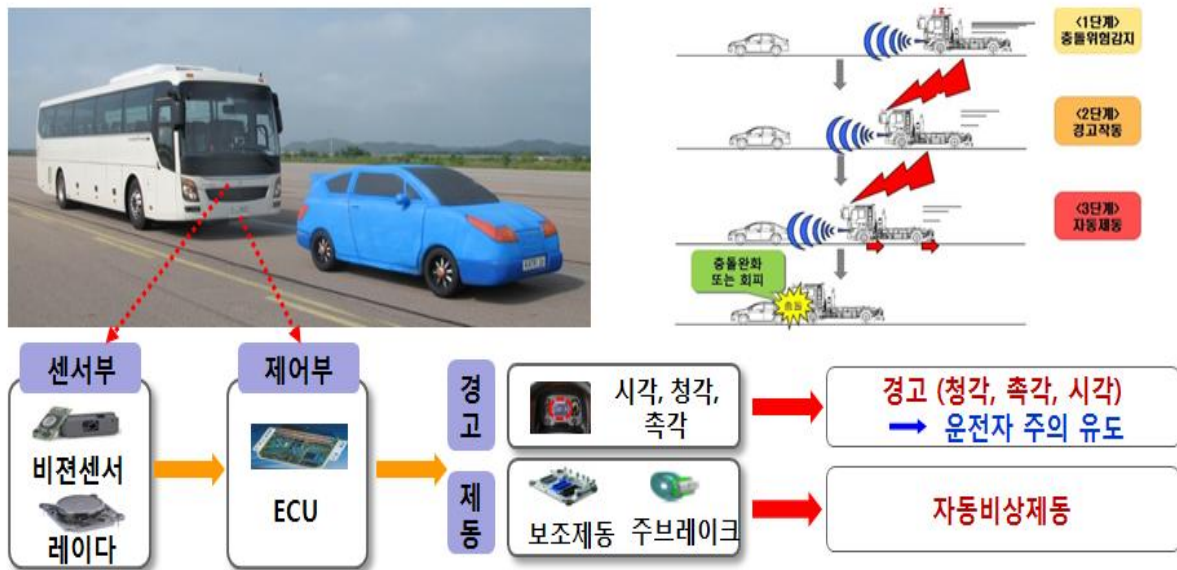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정의) 주행 중 전방의 물체와 충돌 회피·완화를 위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

- 자동차가 전방의 물체를 감지하여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시·청각 경고 전달 이후 운전자 미반응 시 제동장치 작동



□ (작동요건) 전방 물체에 대해 상대속도 10~40km/h에서 충돌 방지하고, 상대속도 40~60km/h에서 충돌 완화해야함

□ (적용현황) 대형 화물·특수·승합자동차에 대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17.1.)을 시작으로 현재 쏘라종에 대해 적용 중('23.1.)

구분	화물/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3.5톤 이하 화물·특수차
	3.5톤~20톤	20톤 초과	11m이하	11m초과	
신규 개발	'18.1.10	'17.1.9	'18.1.10	'17.1.9	'23.1.1
기존 양산	'18.1.10	'19.1.1	'18.1.10	'18.1.1	'26.1.1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 7. 11., 2022. 10. 26.>(각 호 생략)